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2. 1. .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의 안	2002-4
번 호	

1. 개정이유

김제시 하부조직을 통한 지방세 관련서류의 송달 방법을 마련하여 지방세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통·리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책임감 부여로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서류 송달의 방법 신설(안 제10조2호)
 - 통·리장을 통한 세금고지서·독촉장·최고장 등 위임 송달하는 방법
 - 고지서의 위탁 송달시 송달 수수료 지급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지방세법제51조의2제1항, 동법시행령제39조의2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여
- 다. 협의 등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2)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여
3) 입법예고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서류송달의 방법) ①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김제시리·동이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촉·임명된 통·리장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위탁 송달시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	<p><u>제10조의2(서류송달의방법) ①지</u> <u>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</u> <u>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김</u> <u>제시리·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</u> <u>한조례에 의하여 위촉·임명된</u> <u>통·리장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<u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</u> <u>위탁 송달시 송달수량 또는 우</u> <u>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</u> <u>위안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</u> <u>급할 수 있다.</u></p>